별첨 1 중소기업 대상기업 판단기준

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

(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)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
1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평균매출액등 1,500억원 이하
2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	
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	
4. 1차 금속 제조업	C24	
5. 전기장비 제조업	C28	
6. 가구 제조업	C32	
7. 농업, 임업 및 어업	A	
8. 광업	В	
9. 식료품 제조업	C10	
10. 담배 제조업	C12	
1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 제외)	C13	
1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 제외)	C16	
13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	
14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 제외)	C20	
15.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	평균매출액등
16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)	C25	1,000억원 이하
17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	
18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	
19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	
20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	C31	
21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D	
22. 수도업	E36	
23. 건설업	F	
24. 도매 및 소매업	G	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
25. 음료 제조업	C11	
26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8	
2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	
2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	
29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	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
30. 그 밖의 제품 제조업	C33	000 4 1 9
31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수도업 제외)	E (E36 제외)	
32. 운수 및 창고업	Н	
33. 정보통신업	J	
34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C34	
35.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	
36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(임대업 제외)	N (N76 제외)	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
37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	000극권 의에
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R	
39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S	
40. 숙박 및 음식점업	I	
41. 금융 및 보험업	K	
42. 부동산업	L	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
43. 임대업	N76	
44. 교육 서비스업	Р	

- 지고 1.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 2.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(C30393),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(C31202)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, 항공기용부품 제조업(C31322)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,500억원 이하로 한다.

별첨 2 지식서비스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분류번호

○ 지식서비스산업

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(10차)	해 당 업 종
3900	환경정화 및 복원업
46	도매 및 상품중개업
582	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5911	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
59120	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
59201	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
612	전기통신업
620	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
631	자료처리, 호스팅,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
639	기타 정보 서비스업
701	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
702	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
711	법무관련 서비스업
712	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
713	광고업
714	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
71531	경영컨설팅업
721	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
729	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
732	전문디자인업
73902	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
73903	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
73909	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
741	사업시설 유지·관리 서비스업
75320	보안 시스템 서비스업
75992	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
75994	포장 및 충전업
85503	온라인 교육 학원(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)
8566	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
901	창작, 예술관련 서비스업

○ 문화콘텐츠산업

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(10차)	해 당 업 종
33402	영상게임기 제조업
58112	만화 출판업
58113	일반 서적 출판업
58211	유선 온라인·일반 모바일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58219	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58221	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58222	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59111	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
59112	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
59113	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
59114	방송 프로그램 제작업
59120	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
59130	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
59201	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
59202	녹음시설 운영업
60221	프로그램 공급업
63120	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
63991	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
71310	광고 대행업
71391	옥외 및 전시 광고업
71392	광고매체 판매업
71393	광고물 문안, 도안, 설계 등 작성업
71400	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
73202	제품 디자인업
73203	시각 디자인업
73209	패션,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
75992	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
85503	온라인 교육 학원
90110	공연시설 운영업
90191	공연 기획업

별첨 3 참여기업 제외 대상

- (1) 소비 향락업*, 또는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* 업종
 - ※ 소비·향락업
 -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의 '청소년유해업소'.
 -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해당기업.
 -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
 - ※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 대상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
 -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(어린이집, 관리사무소 등)
 -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
- (2) 3개월 미만의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(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등)
- (3)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공공기관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공기업 (알리오시스템(www.alio.go.kr) 상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 현황 참조)
- (4) 「초·중등 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
- (5) 4대 사회보험 미가입 기업
- (6) 공고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전까지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

(인위적 감원 : 고용보험 상실사유 구분 코드번호 "23" ①~⑥ 또는 "26" ③)

- (7) 지원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지원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
- (8) 노사분규 중인 기업 등 참여인력의 정상 근무가 어려운 기업
- (9)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
- (11) 참여기업 중 채용계획 이행률 50% 미만으로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 ※ 채용계획 이행률 = (채용인원 수×채용자 근속기간) / (채용 계획인원 수×12개월) ※ 채용계획 이행률 계산시 대체 채용자 근속기간 포함
- (11) 과거 인위적 감원 등으로 사업 참여제한 중인 기업
- (12) 자본잠식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렵거나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

별첨 4 참여인력 제외 대상

- (1) 법령상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자
- (2)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
- (3) 공고일 이전 1년이내 채용예정 기업 또는 채용예정 기업과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자
- (4)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
- (5) 당해기업에서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를 한 사실이 있는 자
- (6) 특정 자격증 취득의 전제가 되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자
- (7)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 및 배우자와 직계비속, 형제 · 자매 관계인 자
- (8) 과거 직접일자리사업 참여로 추가 참여가 제한 중인 자
- (9) 국가 연구개발사업 등 타 지원사업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
- (10)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인력으로 채용되었던 자
- (11) 기타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

별첨 5 협약해지 / 채용장려금 지급중단 및 보류사유

[협약해지 사유]

- (1) 서류 보완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기한내 불이행
- (2) 전문인력 운영이 당초 사업계획 및 분야별 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
- (3) 지원기간 중 참여기업의 사업장에 인위적 감원이 발생하는 경우
- (4) 지원 기간 중 연구개발분야 신청 기업의 부설연구소 인증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인정서 유효기간 만료
- (5) 지원기간 중 참여기업이 대구시 이외 지역으로 전문인력이 근무중인 사업장 이전
- (6) 지원기간 중 전문인력이 대구시 이외 지역으로 주소지 이전
- (7) 지침 및 협약을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장려금을 신청 또는 수령
- (8) 전문인력이 타 일자리사업이나 연구개발사업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
- (9) 기타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

[채용장려금 지급중단 사유]

- (1) 특별한 사유없이 2회이상 연속하여 채용장려금을 신청하지 않거나. 지원기간 종료후 3개월 경과시까지 채용장려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
- (2) 당해년도 사업기간 종료 5일전까지 채용장려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
- (3) 지원기간 중 참여인력이 자발적 사유로 퇴사 후 대체인력 미채용시
- (4)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경우

[채용장려금 지급보류 사유]

- (1) 고용보험료 미납부액 발생시 완납시까지
- (2) 의무교육 미이수시 의무교육 완료시까지
- (3) 일시적 사유로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유해소시까지